

의안번호	2205606
의 퇴 인	김윤 의원
회 답 일	2024. 12. 12.
추 계 번호	24F5153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지방의료원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1년 연장 —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 세수는 2025년 1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5
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38조의2)	-12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8조의2 (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)	○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1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5.12.31.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38조의2 (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세수효과는 2025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

- 향후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간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취득세의 경우 최근 3년(2021~2023년)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고, 재산세의 경우 최근 2년(2022~2023년) 증가율만큼 증가한다고 가정
 - (취득세) 최근 3년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(3.4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(재산세) 2021년 재산세 감면은 2021년 취득분 및 부칙에 따라 2021년 이전 5년간 소급적용 하도록 하였으나, 2021년 법개정으로 2022년 이후에는 취득기간과 관계없이 재산세 감면이 적용된 점을 감안하여 2022 ~2023년 재산세 증가율(6.6%)만큼 증가한다고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 개요)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
 - 취득세 감면율은 2016년까지 100%로 유지되다가, 2017년 이후 감면율을 75%로 축소
 - 단,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 2021년 이후 85%로 감면율 상향
 - 재산세 또한 감면율 및 감면 범위가 축소
 - 감면율은 2016년까지 100%로 유지되다가, 2017년 이후는 75%로 축소(단,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 2021년 이후 85%로 감면율 상향)
 - 2021년 이후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
 - 2021년 취득분은 취득 후 5년간 재산세 감면, 2022년 이후에는 제한 조건 없음
- (감면실적) 최근 3년간(2021~2023년)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실적은 다음과 같음
 - (취득세) 최근 3년간(2021~2023년) 지방의료원의 의료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2021년 4.5억원, 2023년 4.3억원으로 증감추세는 일정하지 않으며 연평균 3.4억원 감소

[표 2] 최근 3년간 지방의료원의 의료시설 취득세 감면실적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1	2022	2023	연평균액
취득세 감면액	4.5	1.5	4.3	3.4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- (재산세) 최근 3년간(2021~2023년) 지방의료원의 의료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은 2021년 0.9억원, 2023년 7.6억원으로 증감추세에 있으며, 2021년 특이치를 제외한 최근 2년(2022~2023년)간 6.6% 증가

[표 3] 최근 3년간 지방의료원의 의료시설 재산세 감면실적

(단위: 억원,%)

구 분	2021	2022	2023	연평균 증가율 (‘22~’23)
재산세 감면액	0.9	7.1	7.6	6.6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나. 추계방법 및 결과

-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수는 2025년 1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(취득세) 취득세는 최근 3년(2021~2023년)간 연평균액(3.4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(재산세) 재산세는 2021년 특이치를 제외한 최근 2년(2022~2023년)간 증가율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4]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5
취득세 감면액	3.4
재산세 감면액	8.6
합 계	12.0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 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최천규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838	choi1009@assembly.go.kr